

40th History of KDA

1	9	6	8
2	0	0	8

부 록

역대 임원 명단
현 임원 명단
학회 회칙
재단 정관
위원회 규정
연혁
자료수집 명단

■ 대한당뇨병학회 역대 임원진

1. 회장제 시기(1968~1999년)

	회 장	부 회 장	총 무	임 기
초대~2대	김응진 서울의대 내과	이상용 작고 민헌기 서울의대 내과		1968.10~1972.11
3대~4대	이상용 작고	김명환 국립경찰병원 내과 민헌기 서울의대 명예교수	허갑범 연세의대 내과	1972.12 ~ 1976.11
5대~6대	민병석 작고	윤영길 윤영길내과의원 이태희 전남의대 내과		1976.12 ~ 1979.11
7대~8대	민헌기 서울의대 내과	고광옥 작고 최영길 경희의대 내과	조보연 서울의대 내과 이홍규 서울의대 내과	1979.12 ~ 1983.11
9대~10대	최영길 포천중문의대 내과	김목현 아주의대 내과 허갑범 연세의대 내과	김광원 성균관의대 내과 김영설 경희의대 내과	1983.12 ~ 1987.10
11대~12대	이태희 광주의원 당뇨병연구소	경난호 이대의대 내과 허갑범 연세의대 내과	신순현 중앙의대 내과 부총무 : 정민영	1987.11 ~ 1991.10
13대~14대	허갑범 허내과의원	신순현 중앙의대 내과 이홍규 서울의대 내과	이현철 연세의대 내과 부총무 : 유형준	1991.11 ~ 1995.10
15대~16대	신순현 중앙의대 내과	김광원 성균관의대 내과 손호영 가톨릭의대 내과	오연상 중앙의대 내과 부총무 : 고경수(95~97) : 송영득(98~99)	1995.11 ~ 1999.12

2. 이사장제 시기(2000~)

	회 장	이 사 장	부 회 장	총 무	임 기
1대	김영건 충남의대 내과 이홍규 서울의대 내과	강성구 가톨릭의대 내과	김선우 성균관의대 내과 김덕희 연세의대 내과 김선우 성균관의대 내과 김용기 부산의대 내과	차봉연 가톨릭의대 내과 부총무 : 송영득, 민경환 김두만, 박중열, 백세현	2000.1.1.~2000.12.31 2001.1.1.~2001.12.31
2대	김덕희 연세의대 소아과 강성구 가톨릭의대 내과	김광원 성균관의대 내과	김진우 경희의대 내과 정민영 전남의대 내과 김선우 성균관의대 내과 김원호 파티마병원 내과	이문규 성균관의대 내과 부총무 : 손현식, 민경환	2002.1.1~2002.12.31 2003.1.1~2003.12.31
3대	김선우 성균관의대 내과 김광원 성균관의대 내과	이현철 연세의대 내과	김태화 한양의대 내과 김보완 경북의대 내과 신재훈 한양의대 소아과 임경호 인제의대 내과	차봉수 연세의대 내과 부총무 : 안철우, 오승준 권혁상, 조영민	2004.1.1~2004.12.31 2005.1.1~2005.12.31
4대	김태화 한양의대 내과 김용기 부산의대 내과	손호영 가톨릭의대 내과	최동섭 고려의대 내과 양세원 서울의대 소아과 백홍선 전북의대 내과 이병두 인제의대 내과	윤건호 가톨릭의대 내과 부총무 : 안규정(수석) 김대중, 손만석, 김병준 최경묵, 최성희	2006.1.1~2006.12.31 2007.1.1~2007.12.31

대한당뇨병학회 현 임원진



2008년 8월 23일 촬영

직 위	이 름	소 속
회장	김영설	경희의대 내과
이사장	최동섭	고려의대 내과
부회장	차봉연	가톨릭의대 내과
부회장	최문기	한림의대 내과
총무	고경수	인제의대 내과
재무	박중열	울산의대 내과
수석부총무	김신곤	고려의대 내과
부총무	권혁상	가톨릭의대 내과
부총무	김중화	세종병원 내과
부총무	최성희	서울의대 내과
학술위원회 이사	이기업	울산의대 내과
학술위원회 간사	박철영	성균관의대 내과
교육위원회 이사	김두만	한림의대 내과
교육위원회 간사	강준구	한림의대 내과
간행위원회 이사	손현식	가톨릭의대 내과
간행위원회 간사	손태서	가톨릭의대 내과
수련위원회 이사	이형우	영남의대 내과
수련위원회 간사	조영민	서울의대 내과
연구위원회 이사	이인규	경북의대 내과
연구위원회 간사	이우제	인제의대 내과
식품영양위원회 이사	장학철	서울의대 내과
식품영양위원회 간사	임 수	서울의대 내과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이사	박태선	전북의대 내과
약제 및 보험법제위원회 간사	박석오	광명성애병원 내과
홍보위원회 이사	차봉수	연세의대 내과
홍보위원회 간사	김철식	한림의대 내과
국제협력위원회 이사	이문규	성균관의대 내과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김성래	가톨릭의대 내과
무임소 이사	조용욱	포천중문의대 내과
무임소 이사	조정구	원광의대 내과

직 위	이 름	소 속
진단소위원장	성연아	이화의대 내과
진단소위원회 간사	이혜진	이화의대 내과
치료소위원장	우정택	경희의대 내과
치료소위원회 간사	오승준	경희의대 내과
역학소위원장	박용수	한양의대 내과
역학소위원회 간사	김동준	인제의대 내과
인터넷관리소위원장	오승준	경희의대 내과
인터넷관리소위원회 간사	노정현	인제의대 내과
캠프소위원장	정춘희	원주연세의대 내과
캠프소위원회 간사	노정현	인제의대 내과
40주년 기념사업단 위원장	유형준	한림의대 내과
40주년 기념사업단 간사	고경수	인제의대 내과
기초통계연구 TFT	백세현	고려의대 내과
기초통계연구 TFT	박이병	가천의대 내과
감사	배학연	조선의대 내과
감사	유순집	가톨릭의대 내과
호남지회 회장	배학연	조선의대 내과
호남지회 총무	김상용	조선의대 내과
영남지회 회장	정순일	경상의대 내과
영남(대구경북) 회장	이형우	영남의대 내과
영남(대구경북) 총무	윤지성	영남의대 내과
영남(부산경남) 회장	김덕규	동아의대 내과
영남(부산경남) 총무	최영식	고신의대 내과
충청지회 회장	김영건	충남의대 내과
충청지회 총무	박강서	울지의대 내과
충청지회 총무	김현진	울지의대 내과
경인지회 회장	김용성	인하의대 내과
경인지회 총무	이관우	아주의대 내과
경인지회 총무	김혜진	아주의대 내과

■ 대한당뇨병학회 회칙

1968.10.4 제정

1985.12.7 개정

1999.6.24 개정

2001.7.26 개정

2007.6.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당뇨병학회(Korean Diabetes Association) 라 칭한다.

제 2조(본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당뇨병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항

학술대회, 연수강좌, 세미나 및 집담회 등의 개최

2항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항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4항

당뇨병 환자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업

6항

기타 본회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구성 및 자격)

본회는 다음 각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항

정회원 및 평생회원: 당뇨병학 연구 및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평생회비는 10년치의 연회비로 한다.

2항

준회원 : 당뇨병학 분야에서 수련중이거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3항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당뇨병학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평의원회에서 승인된 사람.

4항

찬조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법인.

제 6조(입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본회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 신청 하여야 한다.

제 7조(의무 및 권리)

1항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내규 등은 물론 평의원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항

제 5조 1항 2항 4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 등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항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본회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 한다.

4항

제 5조 1) 2) 항에 해당하는 회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3회 이상 본회의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5항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8조(임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항

회 장 1명

2항

부회장 2명

3항

이사장 1명

4항

이사 20명 내외

5항

감사 2명

6항

평의원 100명 내외

제 9조(임원의 임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항

이사장은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항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5항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6항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 10조(임원선출 및 임기)

1항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회장, 부회장은 1년, 이사장,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본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 제도를 두며 차기 이사장은 취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취임시 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2항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항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항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의 보궐선거는 평의원회에서 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1조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회장이나 이사장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없다.

제 12조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조 직

제 13조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항

총회

2항	평의원회	바.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3항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장 재 정
3항	이사회	5항	평의원의 자격	제 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4항	위원회	가. 당뇨병 연구와 당뇨병 환자관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중에서	4항		
제 14조(총회) 1항 총회는 제 5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정기총회는 년 1회 정기학술대회시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결정 및 활동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추인하며 회원의 연구업적을 발표한다. 3항 임시총회는 평의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4항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 15조(평의원회) 1항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년 2회 이상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항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3항 의장은 평의원 1/3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때는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항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나.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다.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마. 본회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제 20조 (예산 및 결산) 1항 각 년도의 세입, 세출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평의원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지에 공고한다. 2항 회계 연도는 연말로 한다.
제 16조(이사회) 1항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년 4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항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부 칙 제 21조 (회칙개정) 1항 본 회칙은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2조 (준칙) 1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항 본 회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3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제 17조(위원회) 1항 제 16조 4항의 각 부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담당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된다. 2항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며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8조(의사록)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참고
- 회장제 시기의 대한당뇨병학회 회칙

학술부 : 학회개최, 잡지발간
재정부 : 재정, 회계
위원회 : 식품영양, 약제, 교육위원회를 둠.

제 4 장 임 원

제 1장 총 칙

- 제 1조 본회는 대한당뇨병학회라 칭함.
제 2조 본회의 목적은 당뇨병학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음.
제 3조 본회의 본부는「서울」에 설치함.
제 4조 본회는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제 8조 본회의 사업을 달행키 위하여 하기 임원을 둠.
회장 1명, 부회장 2명, 평의원 약간명, 감사 2명
본회에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음.
제 9조 평의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거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함.
제 10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단 임원의 중임도 무방함.

제 2장 회 원

- 제 5조 본회의 회원은 당뇨병연구에 종사하는 자 및 본 회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함.
제 6조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에 입회금 및 초년도회비를 첨부 신청함을 요함

제 3 장 조 칙

- 제 7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하기의 부와 위원 회를 둠.
총무부 : 서무, 기획, 지회설치 및 연락에 관한 건

제 5 장 총회 및 위원회

- 제 11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함.
정기총회는 년 1회 이를 소집하여 본회에 관한 일체 사무를 평의하고 회원의 연구업적을 발표함.
임시총회는 평의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이를 소 집함.
제 12조 평의원회는 수시 또는 평의원 삼분의일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함.

제 6 장 재 정

- 제 13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으로써 이 에 충당함.
제 14조 본회의 수지결산은 평의원회를 경유하여 총회 및 잡지에 이를 보고함.

제 7 장 부 칙

- 제 15조 본회칙은 총회의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음.
제 16조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규칙은 일반관례에 준함.

■ 당뇨병학 연구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당뇨병 관련 학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뇨병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당뇨병학 연구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 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 1010호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당뇨병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당뇨병 교육자 관리,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사업
- 2) 당뇨병학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 지원사업
- 3) 당뇨병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뇨병주관을 지정하여 환자의 의식제고와 당뇨병에 대한 각성을 위한 대국민 사업지원

- 4) 당뇨병의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
-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뇨병학회가 인정되는 사업
2. 이 법인이 제1항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재산의 구성)

-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1. 재산목록 기재의 재산
2. 출연금품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4. 재산에서 생기는 잡수입
5. 기타 수입

제7조 (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 등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 부담, 관리를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법인이 매수, 기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3. 이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공익법인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회계손익금 처리)

1.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법인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채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9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7조 (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대한당뇨병학회 이사회의 선출에 따른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이사와 감사는 등기완료 후 그 결과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이사장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제2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이외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결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이사장의 결위시에는 2 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원의 해임)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23조 (이사회 의결사항)

1.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법인 운영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이사회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의사록)

이사회 의사는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회의 경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이를 법인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목록과 같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기구

제29조 (자문기구의 운영 등)

-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 3. 자문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0조 (사무국 운영 등)

- 1. 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해당 부서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재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 후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된다.

제34조 (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시 임원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정관 시행과 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 3. 기타 공익법인의 관례 사항

제38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업년도)

이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3. (임원선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 당시 창립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 대한당뇨병학회 위원회 규정

학술 위원회 규정

-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위원회라고 칭한다
(영문: Scientific Committee,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제 2조(목적)** 위원회는 당뇨병 학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이하 학회로 약칭)내에 설치한다.
- 제 3조(사업)**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 1) 매해 춘계와 추계 당뇨병 학회 학술대회 개최
 - 2) 한일 당뇨병 학술대회 국내 개최
 - 3)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
- 제 4조(구성)**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학회 정회원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위원중 1명의 간사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회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과 연임을 할 수 있다.
- 제 7조(재정)** 위원회의 소요경비는 학회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학회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 8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학회평의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발표한다.
3)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행위원회 규정

-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당뇨병학회 간행위원회라 칭한다
(영문: Committee of Publication,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제 2조(목적)** 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심사, 편집 및 발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사업)**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회 학술지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당뇨병: 년 6회 발행,
임상당뇨병: 년 4회 발행
 - 2) 당뇨병 전문 도서의 발간
 - 3) Korea Medline에 학회지 논문 수록

- 4) 우수 논문의 추천
- 5) 학회지 발전을 위한 workshop 개최
- 6)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

- 제 4조(구성)**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학회 정회원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위원중 1명의 간사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과 연임을 할 수 있다.
- 제 7조(재정)**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학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 8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학회 평의원회 인준에 의하여 유효하다.

교육위원회 규정

-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이하 학회) 교육

-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부른다.
(영문: Committee of Education,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제 2조(목적)** 위원회는 당뇨병 교육에 관한 연구, 실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학회에 설치한다.
- 제 3조(사업)** 위원회는 앞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당뇨병 교육 현황 파악
 - 2) 당뇨병 교육 방법, 자료 개발, 평가에 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 3)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교육 및 조직 구성 사업
 - 4) 기타 학회에서 계획한 사업

- 제 4조(구성)**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학회 정회원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위원중 1명의 간사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과 연임을 할 수 있다.
- 제 7조(재정)**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학회 평의원회의 의결

에 의해 학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조(목적) 위원회는 개원의, 전공의 및 전임의에 대한 당뇨병에 관한 수련을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이하 학회로 약칭) 내에 설치한다.		2) 본 규정은 학회 평의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발효된다.	
제 8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4조(구성)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학회 정회원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위원 중 1 명의 간사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3조(사업)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식품영양위원회 규정	
연구위원회 규정		제 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회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개원가의 당뇨병 교육 현황 파악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당뇨병학회 식품, 영양위원회라고 칭한다.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위원회라고 칭한다.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과 연임을 할 수 있다.		2) 개원의를 위한 당뇨병 연수강좌 실시		(영문: Committee of Food and Nutrition)	
(영문: Committee of Research,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제 7조(재정) 위원회의 소요경비는 학회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학회예산에서 집행한다.		3) 전공의, 전임의를 위한 연수강좌 실시		제 2조(목적) 위원회는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 및 영양에 대한 제반연구, 교육 및 실천을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이하 학회약칭)내에 설치함.	
제 2조(목적) 위원회는 당뇨병 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당뇨병학회(이하 학회로 약칭)내에 설치한다.		제 8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4) 일차 진료의를 위한 출판사업 실시		제 3조(사업)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제 3조(사업)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사업을 시행한다.		수련위원회 규정		5) 기타 학회에서 계획한 사업		1) 한국인의 당뇨병 관리에 적당한 식사요법의 개발 및 표준화 사업	
1) 집담회, workshop을 포함한 당뇨병 연구 진흥을 위한 행사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이하 학회) 수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부른다.		제 4조(구성)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학회 정회원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위원 중 1 명의 간사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식사요법의 연구와 교육의 지원	
2)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규정에 의거한 학회 연구비 수여 대상의 심사 및 지급		(영문: Committee of Training,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제 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식사요법 보급을 위한 워크샵개최 및 도서 발간	
3) 당뇨병 연구의 진흥을 위한 책자의 발간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과 연임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표준화된 식사요법의 보완 및 수정	
4) 학회에 소속된 소연구회의 현황 파악 및 지원		제 7조(재정)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학회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학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과 연임을 할 수 있다.		5) 표준화된 식사요법에 따른 실행	
5) 홍보위원회의 협조 아래 학회 Home page 내 위원회 site의 운영		제 8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7조(재정)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학회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학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6) 당뇨병치료에 이용되는 각종식품의개발 및 평가에 대한 사업	
6) 기타 학회에서 의뢰되거나 당뇨병 연구 진		제 8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8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7)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	
						제 4조(구성)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학회 정회원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	

사회 및 평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위원 중 1 명의 간사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 명 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조의 사업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당뇨주간 행사 기획 및 집행 2) 학회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관리 3) 당뇨버스 운영 4) 학회 관련 사진, 기록, 문서 및 동영상 관리 5) 당뇨병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학회 교육 자료 홍보 6) 기타 학회에서 의뢰된 사업	약제 및 보험법제 위원회 규정 (2002년 3월 20일 설치)		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회평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 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개최 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 항은 학회 평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4조(구성) 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 원장은 학회 정회원중 학회 평의위원회에서 선 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 평의 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장은 위원 중 간사 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위 촉할 수 있다. 또한 전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 약제 및 보험- 법제 위원회라고 칭한다. (영문: Committee of Drug and Health Insurance,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 임과 연임을 할 수 있다.			제 2조(목적) 본 위원회는 대한 당뇨병학회(이하 학회로 명 칭)와 관련된 제반 보험-법제 업무 및 당뇨병 관련 약제에 대한 제반 연구, 심의를 담당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7조(회의) 일년에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정 기회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 를 소집할 수 있다(임시회의).
제 7조(재정)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학회 평의위원회의 결의 에 의해 학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 3조(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외부 유관단체 및 당뇨병학회 회원들의 질 의에 대한 응신. 2) 약제, 검사, 교육에 관련된 보험 수가 항 목의 개발 및 타당성 평가. 3) 신약정보 검토 및 소개 4) 학회 및 제 위원회 규정 검토		제 8조(재정) 본 위원회의 소요경비는 학회평의위원회의 결의 에 의해 학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 8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학회 평의위원회 인준에 의하여 유효하다.		제 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개최 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 항은 학회 평의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학회평의위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발효한다.
홍보위원회 규정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 임과 연임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위원회 규정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위원회라 칭한다 (영문: Committee of Public Relations,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제 7조(재정)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학회 평의위원회의 결의 에 의해 학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 국제협력위원회 라고 칭한다. (영문: International Liason Committee, Korean Diabetes Association)		
제 2조(목적) 위원회는 대한당뇨병학회의 학회 내*외적 홍보를 담당하며 대한당뇨병학회 내에 설치 한다.		제 8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학회 평의위원회 인준에 의하여 유효하다.	제 2조(목적)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대 한 당뇨병 학회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 하여 대한당뇨병학회내에 설치된 위원회로 서, 타 학회 및 해외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하 여 대한 당뇨병학회가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 할 수 있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제 3조(사업)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사업을 시행한다.			제 4조(구성)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학회 정회원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 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 사회 및 평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위원 중 1 명의 간사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 명 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조의 사업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개최		

- 제 3조(사업)

본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해외 협력인사 관리

2) 대한 당뇨병학회의 국제 접촉 창구 개설

3) 타 당뇨병학회와의 교류 증진

4) 기타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 제 4조(구성)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학회 정회원중 이사장이 선임한다. 위원은 이사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이사는 위원 중 1 명의 간사를 지명하며 필요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전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 5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회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 제 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 7조(회의)

일년에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정기회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임시회의).
- 제 8조(재정)

본 위원회의 소요경비는 학회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학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 9조(부칙)

1) 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세무사항은 일반 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학회평의원회의 인준에 의하여
- 발효한다.
- 대한당뇨병학회 연혁
- | 대한당뇨병학회의 역사 | 년도 | 세계 당뇨병의 역사 |
|-------------|-----------|---|
| | 서기10 | 당뇨병에 관한 언급 - 셀수스(Celsus) |
| | 130 ~ 200 | 당뇨병이란 말을 만들 - 아레테우스(Aretaeus) |
| | 600 | 당뇨병 식사요법에 관한 언급 - 센세미나오(孫思邈) |
| | 1300 | 소갈(消渴)이란 기록 -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한국) |
| | 1433 | 소변이 달다(甘尿)란 기록 -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한국) |
| | 1613 | 실명(失明)등에 관해 기록 - 동의보감(東醫寶鑑)(한국) |
| | 1775 | 소변이 단것은 당분(糖分) 때문 -도브슨(Dobson) |
| | 1788 | 췌장의 병리소견 기록 - 콜리(Cawley) |
| | 1850 | 금식에 의해 식사요법 - 보카르다트(Bouchardat), 누르텐(Noorde), 나우닌(Naunyn), 조슬린(Joslin) 등 |
| | 1869 | 랑게르한스씨섬 발견 - 랑게르한스(Langerhans) |
| | 1870 | 당이 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됨 - 버나드(Bernard) |
| | 1874 | 쿠스마울 호흡 - 쿠스마울(Kussmaul) |
| | 1889 | 개에서 췌장 절제로 당뇨병 유발 - 본메링(Von Mering), 민코브스키(Minkowski) |
| | 1921 | 인슐린 발견 - 뱅팅(Banting), 베스트(Best) |
| | 1923 | 후세이 현상 - 후세이(Houssay) |
| | 1936 | 프로타민 아연 인슐린 개발 - 하게돈(Hagedorn)
고양이에서 부신절제로 당뇨병 호전 - 롱(Long), 루켄스(Lukens) |
| | 1938 | NPH(Neutral Protamine Hagedorn)인슐린 개발 - 하게돈(Hagedorn) |
| | 1950 | 세계당뇨병연맹(IDF) 창설 |
| | 1955 | 인슐린 구조 규명 - 생거(Sanger)
경구혈당강하제 개발 - 프랑크(Franke), 후스(Fuchs) |
| | 1956 | 톨부타미드(tolbutamide) 개발 - 업존(Upjohn) 社 |
- 520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부록
- 부록 521

대한당뇨병학회의 역사	년도	세계 당뇨병의 역사
	1958	클로르프로파마이드(chlorpropamide, diabinese)개발 - 화이자(Pfizer) 社
	1960	인슐린의 방사성 동위원소 면역 측정 - 버슨(Berson), 알로우(Yellow)
	1963	인슐린합성 - 카쵸야니스(Katsoyannis), 딕슨(Dixon)
대한당뇨병학회(Korean Diabetes Association) 창립총회 (10월 4일)	1968	프로인슐린(proinsulin)발견 - 스타이너(Steiner)
제1차 학술대회 및 총회 (6월 13일)	1970	UGDP 논란
『당뇨병 치료를 위한 식품교환표』 발간		
	1971	인슐린 수용체 규명 - Pierre Freychet
학회지 『당뇨병』창간 (3월 1일)	1972	
세계당뇨병학회(IDF) 가입		
제8차 IDF 대회에 김응진 최초 참석	1973	
	1979	제10차 IDF 대회(오스트리아 비엔나) ADA Criteria
	1980	인간 인슐린 유전자 보고 - Graham Bell
제1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 (10월 31일)	1981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협의회 정식 가입 (3월 5일)	1982	제11차 IDF 대회(케냐 나이로비)
제5~6대 민병석 회장 버마 아웅산에서 사망 (10월 9일)	1983	
	1984	IDF-WPR(서태평양지역) 창설
제1차 춘계학술대회 (3월 11일)	1985	제12차 IDF 대회(스페인 마드리드)
회원의 2원화(정회원, 준회원) (5월 9일)		
영남지회 창립 총회 (5월)		
대한의학협회 건물로 사무실 이전 결정 (11월)		
설원연구비 신설 (7월 16일)	1986	
식품영양위원회, 약제위원회 구성 결의 (1월 23일)	1987	제1차 IDF-WPR 대회 (일본 동경, 10월 22~24일)
학회지 『당뇨병』 합본영인본 출간 (3월 25일)		
제1차 한불당뇨병심포지엄 (4월 15일)		
당뇨병 식사요법 심포지엄 및 워크샵 (9월 12일)		

대한당뇨병학회의 역사	년도	세계 당뇨병의 역사
학회 마크 제정 (12월 21일)	1987	
교육위원회 신설 의결 (12월 21일)		
『당뇨병 식품교환 지침』발간, 배포 (4월 8일)	1988	제13차 IDF 대회 (호주 시드니)
제1차 당뇨병 교육자 협의회 (8월 26일)		
유럽당뇨병학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Assal 초청 특강 (4월 6일)	1989	
당뇨병학용어제정위원회 구성 (5월 22일)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사 발간위원회 구성 (7월 12일)		
학회 컴퓨터 구입 결정 (9월 5일)		
『당뇨병의 진료지침서』발간, 배포 (제5차 춘계학술대회) (5월 12일)	1990	제14차 IDF 대회 (미국 워싱턴)
평생회원제도 도입(제1차 평의원회) (5월 12일)		
제1차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6월 16일)		
당뇨병환자 교육용 팸플렛 제작 결정 (9월 25일)		
당뇨병 교과서 발간 위원회 제정 (6월 7일)	1991	세계당뇨병의 날 제정
당뇨병 교육용 VTR 제작 결정 (8월 27일)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제1차 당뇨병 공개강좌 (6월 27일)	1992	
당뇨병학 교과서 출간 기념식(제19차 추계학술대회) (11월 7일)		
당뇨병 주간 창설 (11월 9~15일)		
제1차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교육과정 (1월 30, 31일)	1993	제2차 IDF-WPR 대회 (서울/ 4월 12, 13일) DCCT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제1차 당뇨병 연구 하계 워크샵 (7월 17, 18일)		
창립 25주년 기념 제20차 추계학술대회 (11월 12일)		
당뇨병 연구 동계 워크샵 (2월 5, 6일)	1994	제15차 IDF 대회 (일본 고베)
대한의학협회 우수학회 선정 (4월 29일)		
당뇨병 소식지 창간호 발간 (5월 20일)		
『당뇨병』 합본영인본 2, 3 호 발간		

대한당뇨병학회의 역사	년도	세계 당뇨병의 역사
의학 통계조사(인슐린의존성 당뇨병의 전국적 발병률 조사 및 등록연구)	1994	
당뇨병 식품교환지침 워크샵 (12월 17일)		
2006년 IDF 유치 준비 위원회 발족 (5월 17일)		
제1차 당뇨병 연수강좌 (7월 7일)	1996	제3차 IDF-WPR 대회 (홍콩)
호남지회 창립 총회 (9월 20일)		
제1차 당뇨병 연구를 위한 정례 집담회 (3월 18일)		
당뇨병 진료지침 개정을 위한 워크샵 (11월 15일)	1997	제16차 IDF 대회 (핀란드 헬싱키)
교과서 2판 발간 (5월 8일)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 개통식 (6월 22일)		
논문 작성 및 심사법 워크샵 (9월 26일)	1998	UK PDS
당뇨버스 출범식 (11월 4일)		
당뇨병 용어집 제작 (11월 24일)		
『인슐린 요법 지침서』제작 (11월 24일)	1999	WHO Criteria 제4차 IDF-WPR 대회 (호주)
IDC 트레이닝 (5월 21일)		
대한당뇨병학회 회칙 개정(이사장제도 도입) (6월 24일)		
제1차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9월 24일)	2000	제17차 IDF 대회 (멕시코 멕시코시티)
제1회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 취득 (205명)		
회장제-이사장제 직제변화 (1월 1일)		
제1차 단계별당뇨병 교육 (4월 23일)	2001	
건강박람회 참여 (6월 1일)		
『임상당뇨병』 창간 (11월 18일)		
충청지회 창립 (3월 17일)	2002	제5차 IDF-WPR 대회 (중국)
제1차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 시험 실시 (11월 17일)		
경인지회 창립 (3월 30일)		
당뇨병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10월 30일)	2003	제18차 IDF 대회 (프랑스 파리)
제1차 Postgraduate Course of Diabetes (11월 16일)		
당뇨박람회 (10월 24~26일)		

대한당뇨병학회의 역사	년도	세계 당뇨병의 역사
대한당뇨병학회 사무국 이전-공덕동 (6월 7일)	2004	
제1차 2030 캠프 (7월 2~4일)		
영남지회 제1차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7월 10일)		
『당뇨병학』 제3판 출판 (7월 19일)	2005	제6차 IDF-WPR 대회 (태국)
당뇨병학회 의학학회상 우수학회상 수상 (3월 29일)	2006	제19차 IDF 대회 (남아프리카공화국)
KDA 진료지침 TFT 구성 (8월)		
당뇨병학 연구재단 설립 (9월 21일)		
『당뇨병』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12월)	2007	
당뇨병 기초연구 TFT 구성		
당뇨병주간 푸른빛 점등식 (11월 14일)		
제1차 Seoul Diabetes Forum(11월 24일)	2008	제7차 IDF-WPR 대회 (뉴질랜드)
2010년 제8차 IDF-WPR 대회 부산 유치 결정 (3월 30일)		

〈연표 참고문헌〉

『대한당뇨병학회 20년사』, 대한당뇨병학회, 의학문화사, 1990
『당뇨병 5000년사』, 대한당뇨병학회, 도서출판 현의학, 2003
『당뇨병의 역사』, 유형준, 대광문화사, 1987
『당뇨병학』(3판), 대한당뇨병학회, 고려의학, 2005
<http://www.idf.org>

■ 편 집 후 기 ■

함께한 40년 건강한 미래로!



유형준 ·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

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니 역시나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료를 좀 더 모으고 원로 선생님들께 하나라도 더 많이 여쭙봤으면 조금이라도 더 알찬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자책해봅니다.

하지만 40년사가 발간된 이후에도 당뇨병학회의 역사는 계속 쌓여갈 것이고 그 역사를 차곡차곡 모아나간다면 10년 후 50년사는 더 깊이 있는 책이 될 것이라 자위하며 아쉬움을 달랠니다.

40주년 기념사업단에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당뇨병학회에도 90대의 김응진 명예회장님부터 20대의 전임의까지 경험도 생각도 다른 23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당뇨병학회가 창립할 1968년에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회원들이 이제 어엿한 당뇨병학회 일원이 되어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당뇨병학회에서도 가장 큰 힘은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건이 어려웠던 19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 회원들이 일심단결하여 중흥기를 맞았던 19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21세기까지 그 변천사를 정리하는 순간순간 가슴이 저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40년사를 읽으시면서 그 감동을 느끼셨을 것이라 확신해봅니다.

당뇨병학회를 탄생시키고 이끌어오신 원로 선생님들, 역대 임원진 선생님들께 깊이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0년사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앨범과 책, 신문 스크랩 등을 보내주신 많은 회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통사 부분 집필을 맡아준 황보승남, 신재경 선생께도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기념사업단 활동에 열성을 다한 위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2008년 10월



40주년 기념사업단 위원과 학회 사무국 직원.
(2008년 5월 9일 제21차 추계학술대회장)

■ 40년사 제작 자료수집 지원 명단 ■

민현기 (서울의대 명예교수)	윤영길 (윤영길내과의원)	이상중 (포천중문의대 내과)
이태희 (광주의원 당뇨병연구소)	신순현 (중앙의대 내과)	김광원 (성균관의대 내과)
이현철 (연세의대 내과)	최동섭 (고려의대 내과)	김영설 (경희의대 내과)
백홍선 (전북의대 내과)	유형준 (한림의대 내과)	이문규 (성균관의대 내과)
정춘희 (원주연세의대 내과)	조용욱 (포천중문의대 내과)	박태선 (전북의대 내과)
김철식 (한림의대 내과)	성연아 (이화의대 내과)	이원영 (성균관의대 내과)
이창범 (한양의대 내과)	오승준 (경희의대 내과)	정혜승 (서울의대 내과)
허규연 (성균관의대 내과)	박영민 (전북의대 영양과)	강은석 (연세의대 내과)
전성환 (연세의대 내과)	조영민 (서울의대 내과)	고은희 (울산의대 내과)
최문기 (한림의대 내과)	조동혁 (전남의대 내과)	김현진 (충남의대 내과)
김정국 (경북의대 내과)	손석만 (부산의대 내과)	박정현 (인제의대 내과)
한국오츠카제약	사노피아벤티스	한독약품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를 만든 사람들

40주년 기념사업단

기념사업단장	최동섭(고려의대)
실무추진위원장	유형준(한림의대)
간 사	고경수(인제의대)
실무위원	강준구(한림의대)
	고승현(가톨릭의대)
	이창범(한양의대)
	정인경(경희의대)
	조영민(서울의대)
	최경묵(고려의대)
	최성희(서울의대)
통사집필	황보승남 신재경
책임편집	이정은(40주년 기념사업단 직원)



발 행 처 대한당뇨병학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빌딩 10층 1010호(우 121-706)
02-714-9064 | www.diabetes.or.kr

편 집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인 쇄 일 2008년 10월 20일
발 행 일 2008년 10월 30일

기획제작 (주)다니기획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8-30 | 02-545-0623 | www.dani.co.kr

진 행 김태연 | 김현동 | 김정덕
A D 진희정 | 노승범
디 자 인 전은경 | 양종명 | 홍수연 | 최희주
사진촬영 김두중 | 빛그리기